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93
----------	-----------

제안일자 : 2019. 04. 24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저감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대상에 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인 “지역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8조의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 제목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 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 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 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 ----- -- 공공임대주택 및 지 역편의시설(지역 주민 이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 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 ----- -----</p>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제8조제4항 중 “장기전세주택 각 호”를 “서울공공주택”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 및 심의하도록”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u>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u></p> <p>2. <u>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u></p> <p>3. 4. <u>삭 제</u></p> <p>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u>행복주택</u> 또는 <u>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u>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u>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u></p> <p>2. (생략)</p> <p><u>〈신 설〉</u></p>	<p>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u>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현행과 같음)</p> <p>② ----- ----- <u>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u> ----- ----- -----.</p> <p>1. ----- ----- ----- <u>소형주택</u></p> <p>2. (현행과 같음)</p> <p>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u>장기전세주택</u> 각 호에 대하여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u>〈신설〉</u></p> <p>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p>	<p><u>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u>가 <u>인수하는 임대주택</u></p> <p>4. 「<u>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u>」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u>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u></p> <p>5. <u>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서울공공주택</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u> 시장은 <u>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u>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 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2조 (생략)</p>	<p>③ -----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p> <p>1.·2. (현행과 같음)</p> <p>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삭제〉</p> <p>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p>